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에서는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사업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정기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 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 등 각종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 두 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어느 한 보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 확인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이용하시거나 우리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각 1부.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1부. 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가입 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③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 사업은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임의가입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 2019년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에 따른 가입 제한 삭제

가입 방법

- ✓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 확인서
※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팩스 제출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

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액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등급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등급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820,000원	40,950원	1,092,0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1,716,00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1,248,00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1,872,0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1,404,0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2,028,00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1,560,00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자동이체 신청, **실제 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 포함) 가입이 제한됩니다.
- ✓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시에는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가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30~50%)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지원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 지원
 - * 1~2등급 : 50%, 3~4등급 : 30% 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go.sbiz.or.kr),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 (국번없이)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사장님에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그대로 드립니다.



가입대상

- ☑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주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다만,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 2020년 1월 7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되어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 ☑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업주 본인(임의가입)
- ☑ **가입신청:**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 분진·진동·연(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필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택한 등급별 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선택한 등급별 평균임금 기준으로 재해보상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061,600원	68,720원	7등급	4,573,806원	152,460원
2등급	2,480,301원	82,677원	8등급	4,992,507원	166,417원
3등급	2,899,002원	96,633원	9등급	5,411,208원	180,374원
4등급	3,317,703원	110,590원	10등급	5,829,909원	194,330원
5등급	3,736,404원	124,547원	11등급	6,248,610원	208,287원
6등급	4,155,105원	138,504원	12등급	6,667,320원	222,244원

업종별 요율 및 월보험료 예시

-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12개 등급 중 선택)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원)

업종	요율	월보험료	업종	요율	월보험료
육상 및 수상운수업, 여객운수업, 화물운수업, 택배업, 퀵서비스업	18	39,78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병의원, 간병사업	6	15,040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13	29,480	음식점, 주점업, 숙박업, 세탁업, 미용실,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각급사무소	8	19,170
건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36	76,890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6	15,04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8	19,170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항만하역, 해상하역, 육상화물취급업	8	19,170
전문기술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6	15,040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방송, 영화, 극장, 공연시설, 도서관, 공예품 제작)	8	19,170

※ 월보험료는 1등급 보수액(2,061,600원) 기준, 출퇴근 재해 요율(1.3) 포함

가입혜택

-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2018.1.1.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 ☑ **산재보험급여** (※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한 경우 요양비 지급 (병원비, 간병료, 이송료 등)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급여기초년액(평균임금×365)의 52%~67% /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치료 후 간호 비용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장례를 위한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최고 15,867,020원, 최저 11,438,960원)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혜택 1]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 하였을 것
(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자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일수

-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 1,092천원~2,028천원)을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폐업” 요건

수급자격 인정

-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폐업
-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하고 폐업
-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 부모, 동거친족의 30일 이상 직접 간호에 따른 폐업
-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폐업

수급자격 제한

- 법령 위반 허가취소,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신청절차

- ✓ 폐업 후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혜택 2]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람)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기간 확인
- 훈련비용의 60%~100% 지원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95%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원)



신청방법

- 내일배움카드신청: HRD-Net(www.hrd.go.kr) 또는 고용센터
- 훈 련 과 정 검 색: HRD-Net(www.hrd.go.kr) 메인화면에서 [직업훈련정보]-[근로자훈련과정] 메뉴 활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가입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다음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등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가입 및 보험료납부 등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인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고유번호증만 가진 경우에만 가입 제한)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은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임의가입 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

- 실업급여: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

3.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월별 보험료

(단위: 원)

등 급	기준보수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합 계 (2.25%)
1등급	1,820,000	4,550	36,400	40,950
2등급	2,080,000	5,200	41,600	46,800
3등급	2,340,000	5,850	46,800	52,650
4등급	2,600,000	6,500	52,000	58,500
5등급	2,860,000	7,150	57,200	64,350
6등급	3,120,000	7,800	62,400	70,200
7등급	3,380,000	8,450	67,600	76,050

※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 성립·소멸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됨

□

4.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단위: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급여액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 실제 실업급여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폐업 요건 등 상세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⑤모두충족)
 - ②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③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④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 ⑤ 폐업일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⑥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⑥ 번 항목 확인해주세요)
-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실업급여 미지급시에도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6.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 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증빙자료】

- ◆ 복식부기 의무자: ①관련 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회계사 확인과 함께 제출)
- ②월별손익계산서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간편장부 대상자: ①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②매출총계청원장 ③6개월 월별 경비(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 증빙자료 】 ◆ 사업조정신청 시기, 신청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FTA로 피해를 입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 증빙자료 】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통지서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정서 사본

라.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로 폐업한 경우

【 증빙자료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마.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여 폐업한 경우

【 증빙자료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바.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증빙자료 】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사. 배우자 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제출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등의 재직증명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아.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 증빙자료 】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계약·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 【 다음요건 】 1) 수탁업체의 의사에 반해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2) 해당 계약에 대한 사업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폐업이 예측 불가능했던 경우
- 계약이 2회 이상 갱신(재계약)되어,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던 경우
-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차.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예) 프랜차이즈 본사의 일방적 가맹 해지, 토지수용 등

【 증빙자료 】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7.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8. 고용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 6개월 연속하여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됨
- 실업급여 수급 시 가입기간별 미납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됨
단, 미납 보험료(연체금 포함) 완납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구 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체납횟수
가입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1회
	2년 이상 ~ 3년 미만	2회
	3년 이상	3회

☐

9.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60~100% 지원 (5년간 300만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과정이 13,000여개 개설되어 있음
※ H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과정 확인 가능

☐

10. 기타 사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시에는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연락** 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요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가입 탈퇴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관계가 소멸되거나, 수급 자격을 미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3년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실업급여 수급 시 납입한 기간만큼 피보험 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주의: 자영업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 기간이므로 임금근로자로 9월, 자영업자로 3개월간 피보험기간을 갖추었다더라도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미충족)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휴업상태인 기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8.5.8.)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원)
	사업의 내용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예[] 아니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보험관리번호		

담당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준보수액(등급)은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준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근로자”수 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사업개시일”과 “업태와 종목” 란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 및 제56호의2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 사용여부 (해당 ☒)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원)	
	업무 내용		
	근로시간	부터	까지
	특정업무 종사여부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연(납) 업무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특정업무 종사경력	최초 종사연월	년 월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 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비전속 퀵서비스기사 또는 퀵서비스업자 [필수 확인 사항]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뒷면 전속성 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건강진단서(사업주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실제 사업주 확인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와 배우자 관계인 경우)	수수료 없음
------	---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속성 확인서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125조 6호(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①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지 않음
- ②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재해 관련 산재보험이 적용제외 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 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6.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7.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작성방법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중소기업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에 "√" 표를 합니다.
7. '특정업무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해당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최초로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열거한 특정업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8.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